

●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- 241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12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미즈호증권아시아리미티드 서울지점
 2. 인가업무
 - 2-11-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
 3. 인가조건
 - 전자금융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중개에 한함
 4. 인가일 : 2017. 9. 6.
- ※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